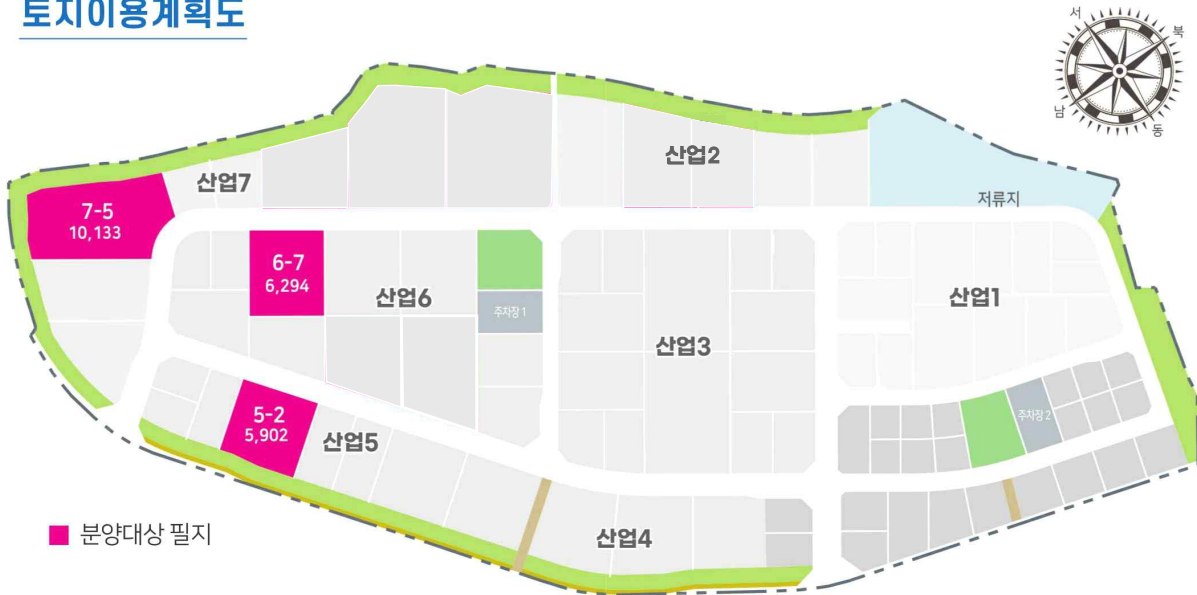


토지이용계획도



■ 분양대상 필지

> 산업단지용지 건폐율 / 용적률

· 건폐율 : 80% · 용적률 : 300%

> 허용용도

·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

> 유치업종

C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8	전기장비 제조업
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	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35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

> 공급금액

구분	면적		공급 금액		구분	면적		공급 금액			
	m ²	평	단가(원/3.3m ²)	금액(원)		m ²	평	단가(원/3.3m ²)	금액(원)		
1	산업2-3	4,378.0	1,324	2,278,313	3,016,405,780	7	산업7-1	11,846.0	3,583	2,251,874	8,068,464,590
2	산업2-4	6,833.0	2,067	2,277,719	4,708,005,330	8	산업7-2	10,854.0	3,283	2,255,109	7,403,524,250
3	산업5-2	5,902.0	1,785	2,487,060	4,439,401,770	9	산업7-3	5,634.0	1,704	2,255,256	3,842,957,030
4	산업6-4	7,552.6	2,285	2,346,240	5,360,392,320	10	산업7-5	10,133.0	3,065	2,297,299	7,041,756,080
5	산업6-5	5,729.9	1,733	2,323,405	4,027,145,610						
6	산업6-7	6,294.0	1,904	2,323,405	4,423,612,020						



공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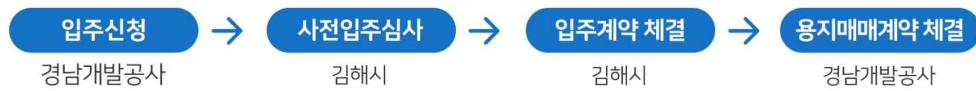
> 입주자격



산업시설 구역

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
> 입주절차



> 토지사용가능 시기 · 즉시(분양대금 완납 이후)

> 분양 대금납부 조건

구분	계약금	1차 중도금	2차 중도금	잔금
납부조건	10%	30%	30%	30%
납부기한	계약일	계약일로부터 6개월	계약일로부터 12개월	계약일로부터 18개월

※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인이 자진 신고 및 납부

※ 대금납부 조건은 계약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인센티브

> 신·증설 기업

구분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설비지원	5%	7%	9%

※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3년이상 사업,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

※ 신규투자 10억원 이상

> 의생명 기업 지원

구분	투자금액 40억, 상시고용인원 25명	투자금액 30억, 상시고용인원 20명	투자금액 20억, 상시고용인원 10명
지원사항	6억원 (투자금액의 10%)	4억원 (투자금액의 10%)	3억원 (투자금액의 10%)

※ 투자금액 : 부지매입비 + 건축비 + 시설장비구입비

> 세제 혜택 · 취득세 75% 감면 · 재산세 5년간 75% 감면

지원혜택

> 중도금 대출 앞선

· 분양대금의 20% 이상 납부한 자 (협약은행 : 농협, 경남, 우리, 하나, 신한, 국민, 기업, 산업, 부산은행)